5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용 시 출신 국가 차별

1 **뉴저지에서 고용 시 출신 국가 차별 및 괴롭힘은 불법입니다.** 뉴저지 차별 금지법(LAD)은 난민, 이민자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고용 시의 국적 차별과 동료, 상사, 고객으로부터의 국적에 따른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차별에는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출생 국가, 문화 또는 언어에 근거한 불공정한 대우가 포함됩니다.

2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출신 국가를 바탕으로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고용 결정(채용, 해고, 급여 등)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멕시코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연방 양식 I-9 절차에 따라 새로 고용한 직원의 채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억양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인 직무라 하더라도 직무에 적합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고용주는 억양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티 크리올 억양을 사용하는데 고용주가 "미국인처럼 말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승진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출신 국가를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힐 수 없습니다.** 고객이나 다른 직원에 의한 국적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이 귀하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방해하는 경우, 고용주는 괴롭힘 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괴롭힘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출신 국가에 대해 경멸적이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고용주는 차별적인 중립적인 정책이나 규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에게 다른 출신 국가보다 더 가혹한 영향을 미치는 중립적인 업무 정책 및 규칙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영어 능력 요구 사항은 출신 국가에 따라 직원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AD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LAD법 위반 신고, 차별 불만 제기 또는 LAD법에 따른 기타 권리 행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귀하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거나 1-833-NJDCR4U (1-833-653-2748)로 전화하세요. DCR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저지의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LAD법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NJCivilRights.gov 를 방문하거나 1.833.NJDCR4U로전화하세요.

뉴저지 법무부 장관실

NJCivilRights.gov

NJ DIVISION ON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